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윤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1970년대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원형택지에 대하여 사후 입법에 따른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정부사업으로 조성하여 분양한 택지임에도
사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현황이 거의 같은 택지임에도 시점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달리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감안하여 주셔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